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가 2003. 12. 31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4조제2항)
 - 여성위원 :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 노력(안 제4조제4항)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안 제4조제5항)
- 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안 제4조의2)
 - 회의소집 : 위원장 필요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통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원칙
- 실비보상(안 제4조의3)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지급 가능
- 위촉의 해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 통합조례 반영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신설된 조항들은 임원선출방식과 위원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소집 안건의 서면통지, 회의록 작성,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실비보상, 위원 위촉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비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의3의 조항신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일비 및 여비(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에 관한 규정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